



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(3):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변화

김동겸 선임연구원

■ 1980년대 중반 이후 보험시장 개방,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필요성이 대두됨.

- 생명보험의 경우 1980년대에는 지급여력과 관련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,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지급능력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 4월 담보력확보기준을 제정함.
 - 직전사업년도 말 책임준비금과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 없는 회사의 경우 이 연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보다 일정금액¹⁾을 초과하도록 요구함.
- 손해보험의 경우는 1986년 3월 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을 통해 “보험계약자잉여금 대비 보유보험료 비율”이 담보력 제도로서 도입되어, 연간 보유보험료의 총액이 보험계약자잉여금의 일정 비율²⁾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.

■ 담보력 기준의 경우 담보력을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정의함에 따라 실질적 지급능력제도로써 한계가 있었고,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.

- 생명보험의 경우 1996년 2월 지급능력제도 보완 대책으로 지급여력기준을 기존의 절대금액 기준에서 회사별 책임준비금의 1%로 조정함으로써 회사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도입함.
 - 적정기준은 “지급여력항목-지급여력기준”이 100억 원 이상임.
- 손해보험의 경우 1998년 2월 손해보험회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보험종목별 보험료 기준 또는 보험금 기준의 지급여력기준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함.

1) FY1991: 30억 원, FY1992: 50억 원, FY1993: 100억 원.

2) FY1987: 900%, FY1988 800%, FY1989 700%, FY1990 600%, FY1991 이후: 500%.

- 일반보험의 경우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중 큰 항목을 지급여력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, 장기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1%를 지급여력기준으로 설정함.

■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합의에 따라 EU 방식(Solvency I)을 준용한 지급여력제도를 1999년 5월에 도입하여 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서 지급여력비율(지급여력금액³⁾/지급여력기준금액)을 100% 이상 유지하도록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함.

-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중 보험리스크와 자산운용리스크에 초점을 맞추어,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함.
 - 생명보험의 경우 “(위험보험금×0.3% 내외)+(책임준비금×4%)”로, 손해보험의 경우 “(1년 간 보유보험료×17.8%)+(책임준비금×4%)” 또는 “(3년 평균 발생손해액×25.2%)+(책임준비금×4%)”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정함.
-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산출 방식이 단순하여 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, 보험회사에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 자본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함.
 - 기존 자기자본제도의 경우 투자자산 별 리스크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였으며,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도 반영하지 않았음.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에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, 감독당국은 2009년 4월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위험기준자기자본(RBC)제도로 변경하여 시범 운영하고 2011년 4월부터 의무 적용 중임.

- 이전의 보험리스크와 자산운용리스크만을 반영하던 체계에서 보험회사에 내재된 보험, 금리, 시장, 신용, 운영리스크를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변경됨.
 - 기존 자산운용리스크를 시장리스크, 신용리스크, 금리리스크로 세분화하여 자산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산정하고,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최저보증옵션에 대한 요구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함.
- RBC 비율(요구자본⁴⁾ 대비 가용자본⁵⁾ 비율)이 100% 미만인 경우 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, 경영개선요구,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행함.

3)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본자본(자본금, 이익잉여금 등)과 보완자본(후순위차입금, 대손충당금 등)을 합산 후 자산성이 없는 미상각신계약비, 영업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함.

4) 보험회사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, 금리, 시장, 신용, 운영리스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한 총 리스크임.

5)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기존 지급여력금액에 해당됨.

〈 표 1〉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제도 변화

시점	관련규정 및 주요내용
1990년대 초반	• 생명보험: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(1991. 4) – 총자산이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보다 일정액 이상 보유 의무화 • 손해보험: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(1986. 3) – 계약자잉여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보유보험료를 유지
1990년대 중반	• 생명보험: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– 매사업년도 말 100억 원 이상의 지급여력 유지(1994. 6) – 매사업년도 말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1% 이상 지급여력 확보(1996. 2) • 보험감독규정: 생명·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(1998. 6) – 생명보험: 매사업년도 말 지급여력비율*이 0을 초과 *지급여력=지급여력항목합계/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– 손해보험: 보험종목별 보험료 또는 보험금 기준의 지급여력기준 이상의 지급여력 보유
1999. 5	• 보험회사 지급여력확보기준 개정(1999. 5) – 보험업감독규정 제7-2조: 지급여력기준금액 · 생명보험: (위험보험금×0.3% 내외)+(책임준비금×4%) · 손해보험: (1년 간 보유보험료×17.8%)+(책임준비금×4%) 또는 (3년 평균 발생손해액×25.2%)+(책임준비금×4%)
2011. 4	• 보험업감독규정 제7-2조: 지급여력기준금액 – 지급여력기준금액 = $\sqrt{\text{보험위험액}^2 + (\text{금리위험액} + \text{신용위험액})^2 + \text{시장위험액}^2 + \text{운영위험액}}$